#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94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이인선·고동진·박충권

김성원 · 최은석 · 강대식

성일종 · 강선영 · 조지연

이종욱 • 조경태 • 박성훈

김위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법률 제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7항 및 제8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의 철 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해당 대상시설의 구조적 특성이나 안전 관리의 위험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의4제1항 중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제6항"을 "제11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9항"을 "제11조의2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대상시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 략)	전용주차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
	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대상시설의 구
	조적 특성이나 안전 관리의
	위험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
	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u>②·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	<u>⑤</u> 제4항

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 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⑥</u> ~ <u>⑨</u> (생 략)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① (생략)

②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 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제

⑥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u> </u>
제8항 및
제9항
① (현행 제11항과 같음)
<u> ③</u> 제12항
ll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생 략)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u>제11조의2제6항</u>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9</u> <u>항</u>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 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u>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u>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u>제11조의2</u> <u>제1항 및 제3항</u>
<u>.</u>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u>제11</u>
<u>조의2제7항</u>
 ② <u>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u>

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